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7.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수익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수익계약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20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 반영

(안 제35조,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및 산림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동상표사용권 획득 우수 농특산물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구미시에서 생산된 농·임·축산물 및 가공품,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5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63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생략) <u><신 설></u>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른 <u>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u>공동상표사용권 획득 우수 농특산물</u>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u>구미시에서 생산된 농·임·축산물 및 그 가공품,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생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u>행정자치부장관이</u>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 <u>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u> ”로 한다)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행정안전부장관이</u> ----- ----- “ <u>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u> ”-- -----

이 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5. (생략)

② 삭제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행정안전부장관 -----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 행정안전부장관 -----

-----.

1. ~ 5. (현행과 같음)

③ -----

----- 행정안전부장관 -----

-----.

1. ~ 4. (현행과 같음)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은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교환차금은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행정

④-----

----- 행
정안전부장관 -----
-----.

⑤-----

----- 행정안전부
장관 -----
-----.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
----- 행정안전부장관 -----

-----.

② -----
----- 행정안전부장관 -----

-----.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 행정

<u>자치부장관</u> 고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 환가산금 이자는 <u>행정자치부장 관</u> 고시 이자로 한다.	<u>안전부장관</u>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 <u>행정안전부장 관</u> -----.
--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 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 21. 생략

④ ~ ⑤ 생략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생략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

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③ ~ ⑤ 생략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등)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

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소관 실·과		회 계 과
입 안 자	과 장	이 관 응
	담 당	현 명 숙
	담 당 자	전 유 향 (480-5072)